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660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334호)	서삼석의원	2026.3.9.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 회의(2026.04.23.)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342호)	서삼석의원	2026.3.10.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 회의(2026.04.23.)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 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
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
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
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75세”를 “85세”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 중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을 “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

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u>75세</u> 미만일 것	2. ----- ----- <u>85세</u>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 ----- ----- ----- ----- ----- -----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 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u>1년 중 6 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 여 근로를 제공할 것</u> 2. 3. (생략) ② (생략)	-----. 1. ----- ----- ----- ----- ----- ----- <u>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 일 이상일 것</u>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